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5. 15.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5월 1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5. 11.)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강호동)

1. 제안이유

도내 대학과 기업의 연계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방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협의회 기능 확대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관련분야 위원을 보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확대(제2조)
 -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협의·조정 기능 추가
- 나. 협의회 관련분야 위원 보강(제3조)
 - 30명 이내 → 40명 이내(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다. 실무위원회 위원 보강(제7조)

- 10명 이내 → 15명 이내(관련분야 위원)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2007년 2월 26일 위원 25명, 실무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충북 인재양성전략 및 교육강도 실현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지역 인력양성 방안 등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하여 대학은 지역연구중심대학, 지역혁신센터, 지역단위 우수대학원, 전문대 특성화 등 BIT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충북도립대학 반도체학과 개설, 충북 반도체고 개편 등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지원이 기관별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과의 연계투자, 협의조정이 미흡함.

이에,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투자와 그에 따른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산업인력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에 도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만, 교육발전협의회 보강위원 중 협의회 위원은 10명이 증가하는 반면 실무위원회의 위원 5명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30인”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 중 각 항과 조문은 띄어 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u>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u> 6. <u>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u>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u> 7. <u>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u>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u>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u> 7. <u>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p> <p>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p> <p>② 위원회 간사는 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p> <p>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p> <p>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p> <p>② 협의회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